

‘회사 설립 더 쉬워진다’

개정 상법 내년 4월 시행... 최저자본금제 없애 돈 없는 사람도 회사 설립
회사와 주주의 합의에 의한 주금납입의 상계도 허용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더불어 미국·EU·일본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회사법을 역동적으로 개정해왔다. 회사재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추세는 법정자본금제도 완화, 무액면주식 도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주주에 대한 배당·환급의 통일적 규율, 자기주식 취득 제한 완화, 현물배당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상황과 선진 입법동향을 반영하고 회사 재무관리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의 법정자본금 제도를 대폭 수정했다. 개정 상법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는데,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정자본금제도를 유지해왔다. 즉 회사에는 일정액 이상의 자본이 납입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의 일정액은 회사에 유보돼야 하고 주주에 대한 환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자본금과 회사의 재무상황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명목자본에 기초하여 회사가 유지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채권자는 신용공여 시 자본의 규모나 준비금의 적립보다는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을 더 중시하므로, 엄격한 자본금제도는 채권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 재무관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주식회사는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했고, 회사 설립 시 발행 예정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주식이 발행되어야 한다는 제한도 폐지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 무형자원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도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둘째, 무액면주식제도가 도입돼 회사는 무액면주식 또는 액면주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영업실적이 나쁠 경우에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액면미달 발행이 제한됨으로써 자금조달에 불편을 겪었지만 무액면주식이 도입됨으로써 유연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자본감소·

주식분할·합병 등 기업재편거래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셋째, 현물 출자 시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현물 출자된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이 존재하는 유가증권을 출자할 경우에는 감사인의 조사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감사인의 조사절차는 출자된 자산가치가 자본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자본충실을 기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평가자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고,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법원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인 현물출자 거래가 외면받을 수도 있어, 거래 규모가

작거나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엔 감사인의 조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현재는 주주의 납입금과 회사 채권과의 상계가 금지되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시에만 상계가 허용된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회사와 주주의 합의에 의한 주금납입의 상계를 허용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의 출자전환을 통한 회사의 구조조정

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계를 실행한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후순위 주주가 돼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를 통해 상계를 허용함이 채권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다섯째, 현재는 자본금 감소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권자보호절차에서 1인의 채권자도 변제나 담보제공의 요구가 가능해 채권자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또 주주에 대한 출자금 반환이 효율적인 경우에도 제약돼 회사의 경영효율을 저해하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개정 상법은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명목상으로 자본이 감소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거치면 충분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지난해 전안에서 열린 취업·창업 박람회

사진: 중앙포토